

휘경마을 두레주택 추가 입주자모집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두레주택의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두레주택이란?

정 의

- 주방, 거실 등 주택의 일부를 건물 내 세대와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1~2인 가구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세대에 맞춰 공공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

※ 셰어하우스 : 입주자의 거주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한 형태로 취사, 휴식 등의 생활이 공동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도록 한 주택유형

특 징

- 주방·거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입주자간 소통을 강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
- 입주자간 스스로 정한 생활규약에 따라 운영하며 자율적인 주거공동체를 형성

공고 개요

공급 대상

주택	공급 호수	소재지	용 도	
			공 용	개 인
휘경마을	3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18다길 31-5 (휘경동 294-175)	거실, 주방, 화장실	주거

주택 개요



공급 세대

구분	세대	전용면적(㎡)	월임대료 *보증금500만원	월임대료 *보증금1500만원	월임대료 *보증금2500만원	비고
휘경마을 동대문구 망우로18다길 31-5	201호	10.92	258,300	205,800	153,300	여성만 신청가능
	202호	10.92	258,300	205,800	153,300	
	203호	10.92	258,300	205,800	153,300	

※ 보증금 및 임대료는 위표에 제시된 세가지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상호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 휘경마을 두레주택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

○ 최초계약기간 : 2년(신청자격 유지시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공급 일정

①	모집 공고	---	2025. 05. 14. (수)
↓			
②	주택공개	---	2025. 05. 20. (화) ~ 2025. 05. 22. (목)
↓			
③	신청접수	---	2025. 05. 29. (목) ~ 2025. 05. 30. (금)
↓			
④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5. 06. 04. (수) ※공급대상 가구 수의 3배수 선정
↓			
⑤	심사서류 제출	---	2025. 06. 16. (월) ~ 2025. 06. 18. (수)
↓			
⑥	입주자선정심사	---	2025. 07. 04. (금)
↓			
⑦	소명대상자 발표	---	2025. 07. 11. (금)
↓			
⑧	증빙(소명)서류 보완제출	---	2025. 07. 18. (금)
↓			
⑨	최종입주대상자 발표	---	2025. 08. 08. (금)
↓			
⑩	주택사전공개	---	2025. 08. 19. (화) ~ 2025. 08. 22. (목)
↓			
⑪	계약	---	2025. 08. 25. (월) ~ 2025. 08. 27. (수)
↓			
⑫	입주	---	2025. 09. 08. (월) ~ 2025. 11. 07. (금)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 05. 14.)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서울시 소재 대학, 고등기술학교 및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신입생 및 24년 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회초년생**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두레주택 입주자 규약 등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대학생 [①~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 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10%이하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30%, 2인인 경우에는 120%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사회초년생 [1), 2) 기준중 하나에 해당하며 ①~④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이 총 5년(1,825일) 이내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 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이하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30%, 2인인 경우에는 120% 이하일 것. ④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4,677,613원	6,572,404원	8,389,670원	9,435,897원	9,934,153원

- ※ 소득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된 금액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867,032원) 합산하여 산정
-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하며,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합니다. 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됩니다.

- ※ ‘다음 학기’란 입주시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대학교 졸업유예자는 대학생제층 중 대학생의 일반자격에 해당하며, 졸업유예자가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할 시 일반자격 미충족으로 결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의미합니다.
-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재직중인 업무에 종사한 기간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하였을 경우 그 전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5년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 사회초년생의 ‘해당 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 ※ 사회초년생은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 ※ 소득 산정방법,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은 공고문 후단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공개

■ 주택공개일 : 2025. 05. 20. (화) ~ 2025. 05. 22. (목) 10:00~16:00

○ 주택공개 기간에 해당 주택 소재지에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개관련 담당부서와 연락처는 공고문 후단 문의전화 참고

신청 접수

■ 신청접수 기간 : 2025. 05. 29. (목) ~ 2025. 05. 30. (금)

■ 신청접수 방법

① [별첨1]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접수용) ※ 신청인 본인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② [별첨2]두레주택 신청서 및 마을활동 계획서 작성후 아래 방법 중 택1하여 제출

※ 반드시 ①,②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하나만 제출시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 소	방 법	비 고
이메일 접수	youthhousing@i-sh.co.kr	신청서류 첨부하여 메일로 발송	2025. 05. 30. (금) 18:00 도착분에 한함
등기우편 접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공급부 두레주택 담당자앞 (우:06336)	신청서류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2025. 05. 30. (금) 소인분에 한함
방문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별관1층 맞춤주택공급부 (3호선 대청역 8번출구)	신청서류 작성하여 지참 후 방문	방문시간:10: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이메일 접수시 제목은 반드시 “취경동 두레주택_신청서류_성명_날짜”순으로 작성하시고, 신청서류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 02-3410-8537)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5. 06. 04. (수) 17:00, 공사홈페이지 게시

○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신청자격 충족 및 마을활동 가능 여부) 공급세대의 3배수까지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며,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전산(난수)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기간 : 2025. 06. 16. (월) ~ 2025. 06. 18.(수)

■ 심사서류 제출 방법 : 아래 방법 중 택1하여 제출

구 분	주 소	방 법	비 고
이메일 접수	youthhousing@i-sh.co.kr	신청서류 첨부하여 메일로 발송	2025. 06. 18. (수) 18:00 도착분에 한함
등기우편 접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공급부 두레주택 담당자앞 (우:06336)	신청서류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2025. 06. 18.(수) 소인분에 한함
방문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별관1층 맞춤주택공급부 (3호선 대청역 8번출구)	신청서류 작성하여 지참 후 방문	방문시간:10: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이메일 접수시 제목은 반드시 “**취경동 두레주택_심사서류_성명_날짜**”순으로 작성하시고, 신청서류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 02-3410-8537)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된 것으로 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발급처
공통제출	① [별첨3]개인정보제공동의서(심사서류제출용) *표안에 (본인,부,모中) 소득조회대상 가구원 모두 기재후 서명 ②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등본(부모님 주소분리시 부모님등본 추가제출) ③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님 이혼시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주민센터
대학생	○ 재학증명서 - (입학 또는 복학 후 1개월 이내, 미제출 시 당첨 및 계약 취소) - 다음 학기 입학예정자 :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 복학예정자 : 휴학증명서 및 [별첨4]각서 - 졸업유예자 : 졸업유예증명서	해당 대학
사회초년생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 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으로 발급) -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실업인정일 기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추가 제출	해당 학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고용센터

입주자선정 심사

■ 입주자선정 심사 : 2025. 07. 04. (금)

- 제출서류 및 마을활동 계획서 내용을 근거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심사위원 구성 : 주민공동체운영회, 공동체분야 전문가 등
- 심사방법 : 심사위원이 자율배점

항목	배점	총점
마을활동 계획	50점	100점
경험 및 지원동기 등	50점	

소명심사대상자 발표

■ 소명심사대상자 발표 : 2025. 07. 11. (금) 17:00, 공사홈페이지 게시

- ※ 소득 및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거절)됩니다.

최종입주대상자 발표

■ 최종입주대상자 발표 : 2025. 08. 08. (금)

- ※ 신청인원이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공급호수의 1.5배수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미계약, 계약후 미입주, 퇴거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예비입주자 유효일은 당첨일로부터 1년임.

■ 동호선정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하며 배정된 동호는 입주자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변경이 불가

주택 공개

■ 주택공개일 : 2025. 08. 19.(화) ~ 2025. 08. 21. (목) 10:00~16:00

- 주택공개 기간에 해당 주택 소재지에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개관련 담당부서와 연락처는 공고문 후단 문의전화 참고

계약 및 입주

- **계약기간** : 2025. 08. 25. (월) ~ 2025. 08. 27. (수)
-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형주택공급부(3호선 대청역 8번출구)
- **계약시간** : 10: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계약시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① 계약금납부영수증 ② 신청인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가능) ③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위조방지 처리된 신운전면허증만 가능)
대리인 계약시	• 직계가족인 경우 : 본인계약 시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본인계약 시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인감도장+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입주기간** : 2025. 09. 08. (월) ~ 2025. 11. 07. (금)
- ※ 입주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입주기간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합니다.

신청 및 계약시 유의사항

공동	○ 최종입주자 선정여부를 유선(전화) 확인할 경우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무주택여부 등)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재계약)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주소지 및 연락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바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안내문 미수취 등 통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한 자,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은 양도나 전대할 수 없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 혹은 전대한 경우 당첨된 날로부터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제한됩니다.
----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르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 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현장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반드시 주택 공개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신청기간에 접수하지 않으면 신청무효 처리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주택 이상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격 심사	○ 주택소유, 소득 금액 등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신청자로서 주택소유, 소득 초과 등에 따라 부적격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계약 및 재계약	○ 계약 체결 후 미입주로 인한 계약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 서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시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입주기준소득 등을 초과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위해행위(사회적 문란, 고성방가, 상습음주 및 흡연, 지인의 잦은 방문 등)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시 재계약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주택 입주시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정화조관리비, 청소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수선유지비, 각종 대행료 및 기타 관리비용 등. 세대에 개별 고지되는 전기, 수도, 가스비는 포함되지 않음) 및 관리비 예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중복입주는 불가능하므로 입주예정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무효 처리됩니다. 단, 계약자(배우자 포함)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 후 세대를 분리하면 계약 및 입주 가능합니다.
○ 입주 후 해당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조건을 회피할 의도로 전입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계직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입주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시 갱신계약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임대주택에 공가세대 발생 시 사업주체는 추가입주자모집을 위해 주택 공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문의전화

■ 신청접수와 입주자 선정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형주택공급부 ☎02) 3410-8537

■ 주택공개와 입주 관련

주택 구분	담당 센터	연락처
동대문구 휘경마을	동대문주거안심종합센터	02) 6496-5434

2025. 05. 14.

 서울주택도시공사

[붙임1] 소득 산정방법

※ 소득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제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제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제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물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물품부 농업직불금
	사업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회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보건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보건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붙임2]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입주자 유의사항(필독)

-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 두레주택의 특성 상 가스(난방·급탕) 및 수도요금 등이 공동 부담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개별요금 및 공동요금(공동전기료, 공동가스료, 공동수도로, 정화조청소비 등)은 매월 납기일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음주, 도박, 소란, 절도, 폭력, 폭행, 청소불량)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생활공간에서 흡연 및 동물을 키우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 ▶ 공동체 활성화의 의무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 타인의 우편물을 수취 개봉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주택 내외에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공동생활공간(복도, 계단, 옥상 등)에 무단으로 집기 및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쓰레기 분리수거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주변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실천하여 쾌적한 세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 별도의 경비실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주민들의 자치관리 및 위탁관리 방법을 통하여 청소와 쓰레기 처리 등의 의무를 분담하여야 합니다.
- ▶ 같은 층이라도 방향에 따라 일조량이 차이가 발생하며 일부세대에서는 조망 및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절기와 같이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의 원인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 내의 시설물에 대해 무단설치, 시설변경, 파손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민공동시설, 조명·가스시설 등 단지 내 공용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 입주지정기간 이후부터는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반 공과금 및 관리비를 입주예정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

라 보상 가능합니다.

-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경제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설비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 산새마을 102호는 외부계단으로 인해 창호 모양이 직삼각형 형태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일조 및 조망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산새마을은 외부계단을 통해 세대로 출입하는 구조이므로 비나 눈이 올 때는 외부계단 이용 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산새마을은 지하1층에 입주인 공용시설(주방, 거실 등)이, 지상1층~3층에 두레주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 휘경마을은 층별 공동화장실 및 공동샤워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새마을은 호별 개인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휘경마을 두레주택 각 호에 설치된 가구류는 옷장, 책상, 책장이며, 산새마을 두레주택 각 호에 설치된 가구류는 신발장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휘경마을은 지하1층~지상1층은 주민자치회의가 사용하는 시설이며, 지상2층~3층에 두레주택 및 입주인공용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레주택 출입 시 별도의 출입문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 휘경마을 두레주택은 입주자간 소통강화,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하여 공동공간(지상2층 복도, 지상3층 거실)에 비디오폰을 설치하였습니다.